울산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763

제출연월일: 2021. 5. 31.

제 출 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개정이유

- 가. 상위 법령인「공직자윤리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 위원 증원 및 위원자격요건 구체화
- 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본식 표현, 어려운 한자어 등을 쉬운 용어로 정비하여 불명확한 단어 및 문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증원(안 제2조)
 - (현행) 3명 ⇒ (변경) 5명
 -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증원
- 나. 위원자격요건 구체화 (안 제2조)
 - (현행) 법관 ⇒ (변경) 판사, 검사, 변호사
 -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자격을 세분화
- 다. 일본식 표현, 어려운 한자 등을 쉬운 용어로 정비

3. 근거법규: 따로 붙임

- 「공직자윤리법」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제4항, 제6항

- 52 (제236회-행정자치위제4차부록)
-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 가. 예산조치 사항: 해당사항 없음
- 나. 규제사무 심의: 해당사항 없음
- 다. 성별영향 평가: 울산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촉시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는 개선내용 반영 (여성가족과-17047호, 2021. 4. 23.)
- 라. 입법예고: 2021. 4. 19. ~ 5. 10.(21일간) / 의견 없음
-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울산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1조의 규정"을 "제21조"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를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명"을 "7명"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3명의 위원은 법관"을 "5명의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3명"을 "5명"으로 하고, "선임하여야" 를 "선임해야"로 한다.
- 제3조의 제목 "(기능)"을 "(위원회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제8조제1항"을 "제8조"로, "재산등록사항의"를 "재산등록사항"으로,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의"를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여부의"를 "여부"로, "제18조의2제3항"을 "제18조의2"로 하고, "업무취급의"를 "업무취급"으로, 같은 항 제5호 중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를 "조례 또는 법령에서"로 한다.
- 제5조제2항 중 "사고가 있을 때에는"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로 한다.
- 제6조제2항제1호 중 "법 제8조제7항"을 "법 제8조"로,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를 "조사의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

54 (제236회-행정자치위제4차부록)

에는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를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을 "제3항에 따라 제척된"으로, "재적위원수에서 이를 제외한다"를 "재적위원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위원회의 간사 등)"을 "(간사 등)"으로 한다. 제9조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공직자윤	제1조 (목적)
리법」제9조 및 <u>제21조의 규정</u> 에	<u>제21조</u>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u>공직자윤리</u>	<u>공</u> 직자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	리위원회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울산광역시 중구 공	제2조 (구성) ①
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	
명을 포함한 <u>5명</u> 의 위원으로 구성	<u>7명</u>
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	
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거나 임명	
한다. <후단 신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u> 따른다.</u>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 	1. <u>5명의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u>
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	
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지원	
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	
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	
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2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
임한다.					

-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u>3명</u> 중 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 2. (생략)
- ③ (생략)

제3조 <u>(기능)</u>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 1. (생략)
- 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재산 등록사항의 심사와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의 처리
- 3. (생략)
- 4.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u>여부의</u>
 확인 및 취업승인과 <u>제18조의2</u>
 <u>제3항</u>에 따른 <u>업무취급의</u> 승인
- 5. 그 밖에 <u>이 조례 또는 관계 법</u><u>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u>정한 사항
- ② (생략)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생 략)

<u>.</u>
1 <u>5명</u>
<u>선임해야</u>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3조 (위원회 기능) ①
1. (현행과 같음)
2
<u>제8조</u> <u>재산</u>
등록사항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
3. (현행과 같음)
4 여부
제18조의2
<u>업무취급</u>
5 <u>조례 또는 법령에서</u>
② (현행과 같음)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생 략)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 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 승인
 - 2. ~ 4. (생 략)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위원회의 심사 ·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 1. ~ 3. (생략)
 -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 ·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 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에서 이 를 제외한다.
 - ⑤ (생략)
- 제7조 (위원회의 간사 등) ①・② (생 략)

제9조(의회에 대한 보고) 위원회는	제9조(의회에 대한 보고)
매년 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	
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 보고서를 <u>제출하여야</u> 한다.	<u>제출해야</u>

근거법규

□ 「공직자윤리법」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국회

- ·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
-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 7. 29.>
-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 2.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 3.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 ②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29., 2015. 12. 29.>
- 1.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의원, 국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 2.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법관, 법원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사항
- 3.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헌법재판소재판관,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 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 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 5.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특별시

-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 직유관단체의 임직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시·군·구의회의원, 시·군·구의 4급 공무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 6.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시·군·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시·군·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 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 7.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4급 이하 공무 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 8.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직자 외의 공직자와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 ④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의 자격, 임기, 선임 및 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1. 7. 29., 2019. 12. 3.>

- 1.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규칙
- 2.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대법원규칙
- 3.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헌법재판소규칙
-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5.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대통령령
- 6.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 위원회와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1. 7. 29.>
- 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법과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규칙, 대통령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9.>

[전문개정 2009. 2. 3.] [시행일 : 2021. 6. 23.] 제9조

62 (제236회-행정자치위제4차부록)

울산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미첨부 사유

○ 연간 비용 추계

세부내역	산출근거	비고
계	1,050천원	구비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 회의참석 수당	5명×70천원×3회 = 1,050천원	

3. 작성자

○ 소 속: 주민소통과

○ 직 급: 지방행정주사보

○ 이 름: 최 미 경

○ 연락처: 052-290-3114